

군포도시공사 제4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화



2021년 6월 3일

군포도시공사 규정 제72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수습직원 근무 성적평정 종합평정점 75점 미만자)

제4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지 원 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
	담당자 성명 (전 화)	이 태 권 (390-7615)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수습임용) ① <생략> ② <생략> 1.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2. ~ 4. <생략> ③ <생략>	제14조(수습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정 종합평정점 75점 미만자)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제40조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3년 --- -----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3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